

#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 ○대통령령 제18761호

###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험업법시행령”을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요 주주”라 한다)

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한 자(이하 “공동보유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본인

나. 임원의 임면 등 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4.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제11조제1항중 “제10조제3항제2호”를 “제10조제3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제1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각각 “금융감독위

제15957호

관

보

2005. 3. 31. (목요일)

원회가”로 하고,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2인”을 “2인(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한 보험설계사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100분의 49”를 “100분의 25(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항(중전의 제8항) 본문중 “제2항 내지 제7항”을 “제2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1.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2.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3.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⑧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2.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환급금

3. 그 밖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총액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사업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제6항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소개를 하게 하고”를 “소개를 하게 하거나”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금지행위 기준”을 “금지행위 기준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제53조제1항제9호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53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한 특별계정 자산으로 제3자의 이익을 피하는 행위

⑤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산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험회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제51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전단중 “증권거래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8.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제60조제3항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7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7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75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75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해산의 결의, 보험계약이전 및 해산·합병 등에 대한 인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8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별표 2의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제1호라목·마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별표 4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제3호를 삭제한다.

2. 제2단계

가. 2005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다만,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 제1단계 허용상품	가. 제1단계 허용상품
나. 개인보장성 보험중 제3보험(주계약에 한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을 제외한다)	나. 개인장기보장성 보험중 제3보험(주계약에 한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을 제외한다)

나. 2008년 4월 1일 이후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 제1단계 허용상품 나. 제3보험을 포함한 개인보장성 보험	가. 제1단계 허용상품 나. 제3보험을 포함한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다. 자동차 보험(개인용)

대통령령 제18093호 보험업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중 “2006년 3월 31일”을 “2008년 3월 31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험업법”을 각각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5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동항제13호 내지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2. 「한국은행법」
3. 「예금자보호법」
4. 「한국산업은행법」
5. 「중소기업은행법」
6. 「장기신용은행법」
7. 「한국수출입은행법」
8. 「증권거래법」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0. 「신탁업법」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4.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15. 「산업발전법」
16. 「상호저축은행법」
17.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신용보증기금법」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0. 「신용협동조합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4. 「선물거래법」
25.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6. 「농업협동조합법」
27. 「수산업협동조합법」
28. 「외국환거래법」

29. 「외국인투자촉진법」
  3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2. 「금융지주회사법」
  3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5. 「신탁업법」
  6. 「증권거래법」
  7. 「선물거래법」

- 9. 「상호저축은행법」
- 10. 「신용협동조합법」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1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림조합법」
-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담보부사채신탁법」
- 6.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32조제3호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

고, 동항제2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5항 단서중 “전자상거래등에서  
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  
명법」”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  
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  
법」”으로,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  
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증권  
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0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2조제2항제5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75조제5항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유선및도선사업법”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수상래저안전법”을 “「수상래저안전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뉘시어선업법”을 “「뉘시어선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14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6호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제81조제4항 및 제8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각각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3조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제3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제4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제6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제7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제8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84조제6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8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이유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제도의 시행일정을 조정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 보험회사 판매비중 제한을 강화하여 방카슈랑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되어 근로자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을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추가하고,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겸영가능 종목 조정(영 제15조제1항)

(1) 손해보험회사가 현재 퇴직보험을 겸영가능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을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종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2) 2005년 12월 시행예정인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회사가 근로자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근로자퇴직연금을 추가함.

(3)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조 기정착 및 확대가 기대됨.

나.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일정 조정(영 별표 4)

(1) 1단계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결과, 은행 등의 불공정 모 집행위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초 계획대로 확대 시행하는 경우 기존 보험모집인의 영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제3보험 상품은 2005년 4월 1일부터 방카슈랑스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제3보험 상품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나머지 개인보장성 보험과 개

인용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함.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방지되어 방카슈랑스 제도가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강화(영 제40조제5항)

(1)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은행 등이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집중 판매함으로써 인하여 은행 등과 제휴하지 못한 중·소형 보험회사의 부실화가 우려됨.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자회사의 상품만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할 수 있는 1개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판매비중의 제한을 강화함.

(3) 판매비중의 제한을 강화하여 은행계 보험자회사 등이 판매경로를 독점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중·소형 보험회사의

제휴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규제 완화(영 제50조제2항)

(1) 최근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운용비율을 총자산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법에 규정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운용비율인 총자산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3) 외화자산운용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3월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오영교  
장관

○대통령령 제18762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